

석면비산측정 결과표

1. 작업장 개요

측정의뢰자 (석면해체·제거업자)	현장명(공사명·작업명) 두호주공1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(2단지) 중 석면해체제거작업(1차) 두호주공1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(2단지) 중 석면해체제거작업(2차)	
	현장 소재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두호로 66 두호주공아파트 1차	
	석면해체·제거작업 신고번호 포항-20170087(1차) 포항-20170102(2차)	업자명(상호) (주)진성종합개발
	전화번호 054-255-1160	대표자 여경화

2. 측정기간 - 2017년 04월 04일(1일간)

3. 측정자(분석자 포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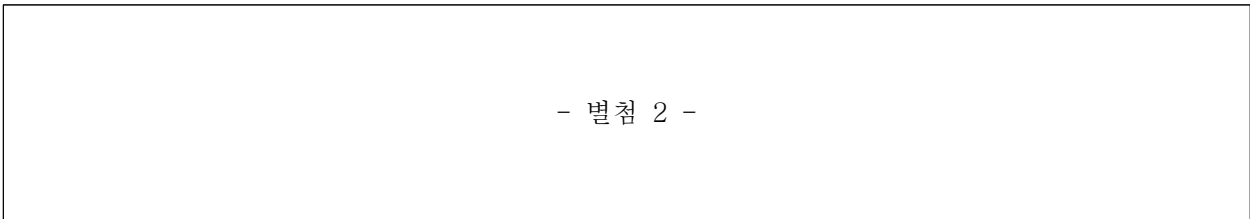
성명	자격종목 및 등급	자격등록번호	비고
위진형	대기환경기사	04202072176X	측정자
최인준	대기환경기사	06201074059W	분석자

4. 측정결과

측정위치	측정시간(분)	유량(l/min)	측정농도(개/cm³)	초과여부
------	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

- 별첨 1 -

5. 측정 위치도(측정 장소)



2017 년 04월 04일

주식회사 메트로리사이클링



(주)진성종합개발 귀하

-별첨1 -

04월 04일

시료번호	측정위치	측정시간(min)	유량(l/min)	측정농도 (개/cm ³)	초과 여부
C-1	부지경계1	240	10.2	0.0021	미만
C-2	부지경계2	240	10.2	0.0017	미만
C-3	부지경계3	240	10.3	0.0020	미만
C-4	부지경계4	240	10.2	0.0015	미만
C-5	거주자주거지역1	120	10.2	0.0034	미만
C-6	거주자주거지역2	120	10.4	0.0028	미만
C-7	거주자주거지역3	120	10.4	0.0028	미만
C-8	거주자주거지역4	120	10.2	0.0030	미만
C-9	작업장주변실외1	120	10.2	0.0028	미만
C-10	작업장주변실외2	120	10.3	0.0032	미만
C-11	실외위생설비	40	10.2	검출한계미만	미만
C-12	24동 위생설비	40	10.2	검출한계미만	미만
C-13	24동 음압기1	40	10.2	검출한계미만	미만
C-14	24동 음압기2	40	10.3	검출한계미만	미만
C-15	24동 폐기물반출구	40	10.2	검출한계미만	미만
C-16	20동 위생설비	40	10.1	검출한계미만	미만
C-17	20동 음압기	40	10.2	검출한계미만	미만
C-18	20동 폐기물반출구	40	10.1	검출한계미만	미만
C-19	폐기물보관1	40	10.1	검출한계미만	미만
C-20	폐기물보관2	40	10.2	검출한계미만	미만

LOD : 7 f/mm³

석면배출허용기준 : 0.01 f/cc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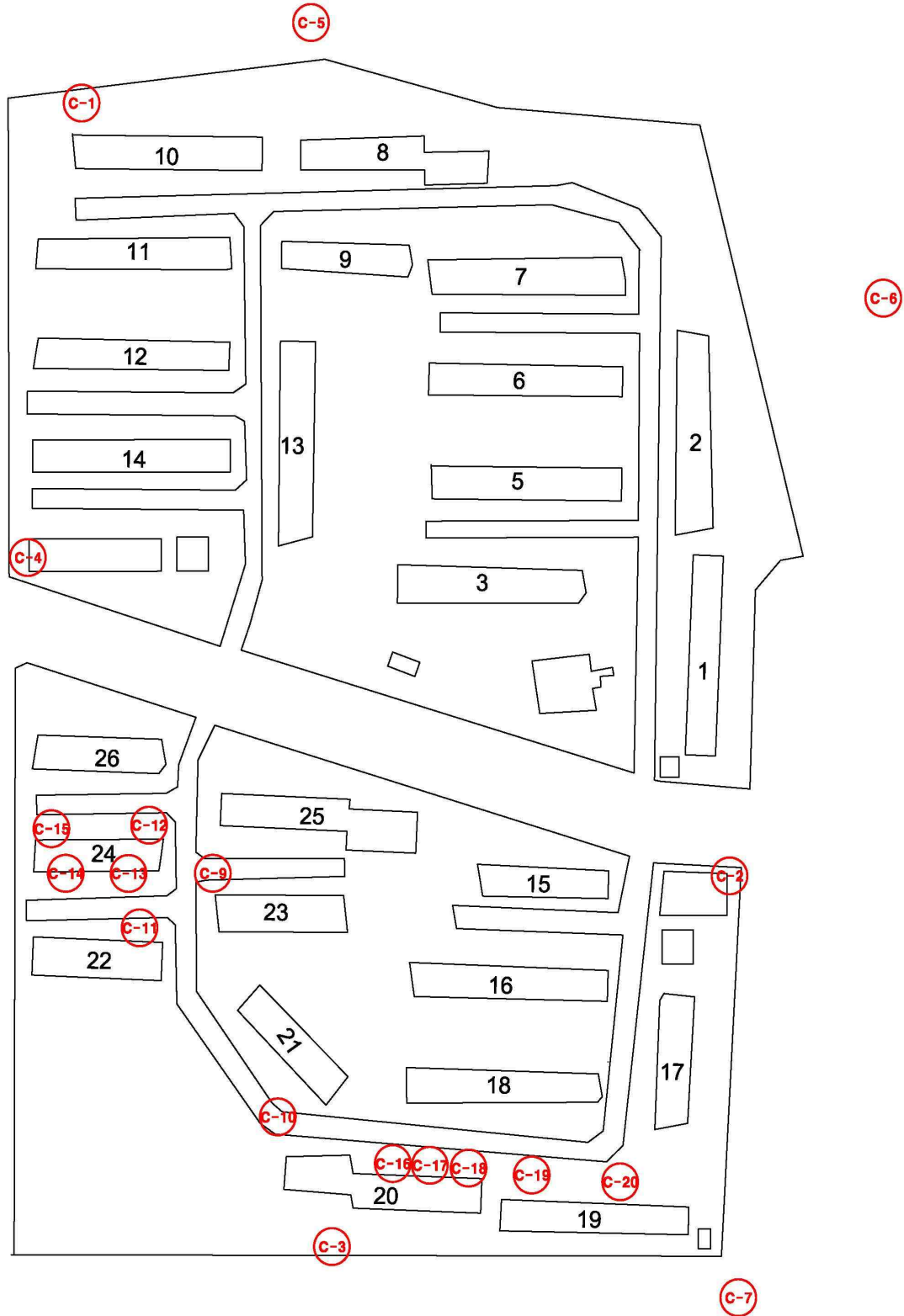
분석방법 :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(ES 02303.1) 위상차현미경법, NIOSH7400 Method 위상차현미경법

본 보고서는 법적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본사의 허가 없이 복사, 재발행 될 수 없음.

별도 통보가 없는한 시료는 7일 이내 폐기됨.

04월 04일

두호주공 1차아파트 단지도



측정 사진
04월 04일



C-1 부지경계1



C-2 부지경계2



C-3 부지경계3



C-4 부지경계4



C-5 거주자주거지역1



C-6 거주자주거지역2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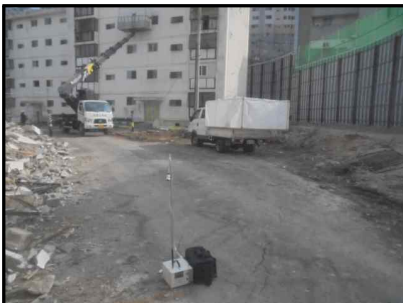
C-7 거주자주거지역3



C-8 거주자주거지역4



C-9 작업장주변실외1



C-10 작업장주변실외2



C-11 실외위생설비



C-12 24동 위생설비



C-13

24동 음압기1



C-14

24동 음압기2



C-15

24동
폐기물반출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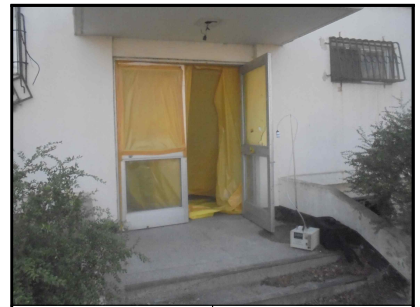
C-16

20동 위생설비



C-17

20동 음압기



C-18

20동
폐기물반출구



C-19

폐기물보관1



C-20

폐기물보관2

석면조사기관 지정서(변경)

기관명	주식회사메트로리사이클링	
소재지	(140-748)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창로 70 (도원동, 도원동삼성래미안아파트상가 4층) 408호	
대표자성명	이영태	
지정사항	총 대행(지정) 한계	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
	관할 지역 대행(지정) 한계	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
	대행(지정) 지역	전국

※ 준수사항

1. 석면조사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고용노동지방관서장의 자료제출요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2. 석면조사기관은 지정받은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『산업안전보건법』 제38조의2 규정의 의하여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2013. 6. 26

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장

